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
2024. 8. 21.

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

□ 점용허가 내역

허가 번호	하천 명칭	토지위치	지목	점용목적	면적	점용기간	점 용 자	
							주 소	성 명
2024-11	탄천	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90-3 둔전동 1 둔전동 22-22 둔전동 22-17 둔전동 211-1 둔전동 211-2	하천	토지의점용 (전주 설치)	10㎡	2024. 8. 21. ~ 2024. 10. 5.	경기도 하남시 춘궁로35번길 32-1	주식회사 원광전기

※ 관계 도면, 조서는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열람. 끝.

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
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8월 21일

중 원 구 청 장

허가 번호	허가 연월일	점용 목적	점용장 소	점용 면적 (㎡)	점용기 간	수 허가 자		비고
						성명	주소	
2024-02	2024. 8. 21.	전주설치	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-8	0.18	2024. 8. 21. ~ 2038. 8. 20.	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	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202	